

깨끗한 온천, 건강을 지키는 온천, 국민과 함께하는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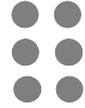
2013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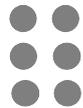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목 차

I. 온천법	5
1. 총론	7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3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9
4. 수수료 및 벌칙 등	28
5. 온천전문검사 지침	32
II. 온천운영	41
1. 온천에 대한 이해	43
2. 온천 현황	47
3. 향후 온천의 내실화 방안	52
4. 행정사항	57
III. 공중위생관리	61
1. 총론	63
2. 공중위생영업 신고	68
3. 공중위생업소 관리	71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75

I



온천법

1. 총론	7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3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9
4. 수수료 및 벌칙 등	28
5. 온천전문검사 지침	32

I. 온천법

1. 총론

가. 온천법의 목적 (법 제1조)

-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 의 (법 제2조)

- ▶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제1호)

<영 제2조>

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
(무기비료,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₁₄)은 0.01mg/L이하일 것
(유해화학 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세정제에서 발생)
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이하일 것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제, 소화제 등에서 발생)

- 온천우선이용권자(제2호) :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온천종사자(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전문검사기관(제4호) :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법 제23조)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과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및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온천우선이용권자 >

- 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②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자

☞ 온천지침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 제7조, 규칙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록기준 증명서류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내 용	관련규정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 조사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확인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온천공 조사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 [별표 5]	
	온천공 영향조사	인근공에 대한 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온천이용허가시	온천자원 평가조사	온천원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지구내 1일 적정 양수량)	법10조 영7조 규칙5조	개발 계획
			법16조 영17조 규칙10조	이용 허가
이용허가일부 5년마다	정기온천 자원조사 성분분석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변화 등 온천의 특 성 (온천원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내 모든공 일제조사 실시 주요성분, 온도, 이용에 따른 효과, 주의사항	법24조② 규칙15조① 법19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특정성분 분석 (유황, 유 리탄산)	수질 적합여부, 성분함량, 금기증, 주의사항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9개기관)

(2013. 4. 15. 현재)

기관명	소재지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031)420-373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0	042)868-3085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0	02)2027-3470
(주)하나 엔지니어링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14	031)345-0507
(주)한국건업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하안동 34-11	02)894-2472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1487	02-578-5001
중앙컨설턴트(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8-1	02-2156-6031
(주)옥수개발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8-14 수성빌딩 4층	02-1577-1940
(주)진산	제주 제주시 오라1동 2444-7	064-756-8868

마.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법 제3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

■ 기관별 온천정책 추진

○ 중앙

-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온천도시의 지정 등
-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재활용대책 수립

○ 시·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발전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바.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26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종사자 교육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별 교육책임자 지정 후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이수 가능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포함)
 -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온천종사자 교육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사. 온천협회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
- ▶ 협회는 법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

- 협회의 사업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온천자원조사·연구사업(온천전문검사, 연구사업, 수질·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온천관리정보체계 구축
 - 유관기관단체·온천발견신고자·온천우선이용권자·온천종사자의 위탁사업

[참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현황

1. 설립 인가일 : 2007. 7. 11.
2.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당주동) 영진빌딩 301호
3. 전 화 번 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4. 임원구성 : 21명(회장1, 명예회장1, 고문3, 부회장1, 감사2, 이사13)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가. 온천의 굴착

■ 온천굴착신고 (법 제12조, 영 제13조, 규칙 제7조)

-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별지 제3호서식)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별지 제3호의2서식)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토지의 원상회복 (법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7조의2)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법 제15조, 영 제16조)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별지 제5호서식)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
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탕, 샤워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급적 불허가 조치

나.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 온천발견신고 (법 제21조)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0호서식)
 -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1호, 제4호)
 - 온천발견 미신고자(법 제12조제4항), 허위신고자(법 제21조제1항)

■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제22조, 규칙 제13조)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 6조, 영 제3, 4, 5조, 규칙 제3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라. 온천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법 제10조, 영 제7,8,9조, 규칙 제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각호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상지역 : 온천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3만㎡ 이상인 지역
- 수립시기 : 온천발견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내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 규칙 제6조)

-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 양수량(톤)
-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의 조정 (법 제10조 제2항)

-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법 제10,10조의2~4조)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지구
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 :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지
등 조성계획·개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단지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의제처리 대상 : 30개 법률 69개 조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있는 30개 법률 6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등

- ▶ 종전에는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온천법(10.2월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법 제10조의2)

-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바.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법 제14조, 영 제15조, 규칙 제8조, 제8조의2)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안전 행정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가. 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영 제17조, 규칙 제10조)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서식)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 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가능함

☞ 온천지침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온천법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온천이용허가 시 유념할 것(현재 미운영)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 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원칙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 예외 : 온천수 이용량의 부족,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한 온천수의 1일 적정 양수량 범위내 가능

나. 일시이용 허가 (영 제17조제4항)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참고자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숙박업 제외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목욕업 제외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다.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법 제18조)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온천과 관련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①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 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② 온천이용시설은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 관리

라. 온천의 보전·관리

■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법 제24조, 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법 제24조의2, 영 제20조)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법 제25조, 규칙 제18조)

-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별지 제9호서식)
 -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 검사기관 · 검사주기 · 검사항목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 기준 초과여부
성분검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법 제 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	매5년 1회이상(단 유황·유리탄산 성분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 정기자원조사 (법 제16조)

- 온천이용의 유효기간은 5년단위로 하며,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 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
-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조사보고서 제출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 규칙 제11조)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별표3]을 적용

※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욕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원 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욕조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4. 수수료 및 벌칙 등

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 제31조, 영 제15조)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민 원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비 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지하수개발 허가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질·성분 검사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법 제5조제6항)

■ 처리기준

- 2차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1 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등록취소	
3. 법 제 7 조 제 2 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3 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7 조 제 4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5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다. 벌 칙 (법 제32조~36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 - 법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 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 - 허위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 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 -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 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 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온천원보호지구내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 	2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 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법 제 36조

라. 과태료 (법 제37조)

■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 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9조제3항)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5조제1항)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 37조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법 제26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5. 온천전문검사 지침

가. 성분검사

-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₄, HCO₃, CO₃)을 meq/ℓ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₃(SO₄) 형

■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₄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₃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2 성분함량이 0.1mg/ℓ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 때 SO₄+2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2 성분함량은 S-2, HS-, H₂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₂)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한 온천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₂)성분의 함량이 40mg/ℓ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ℓ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ℓ 이상인 온천

※ 참고 : 천질별 적용증

	온천성질	목욕용	음료용
염류 온천 (광천)	염화물천	창상, 화상, 만성피부병, 허약아동, 만성부인병	만성소화기병, 만성변비
	탄산수소염천	창상, 화상, 만성피부병	만성소화기병, 당뇨병, 통풍, 간장병
	황산염천(철,알 루미늄-황산염 천 제외)	동맥경화, 창상, 화상, 만 성피부병	만성담낭염, 담석, 만성 변비, 비만증, 당뇨병, 통풍
특수 성분 을 함유 한 요양 온천	이산화탄소천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창 상, 화상	만성소화기병, 만성변비
	함철천	월경장애	빈혈
	동-철 함유천	철 함유 온천에 준함	철 함유 온천에 준함
	유황천	만성피부/부인병, 찰상, 당 뇨, (황화수소형)고혈압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통풍, 변비
	산성천, 함알루 미늄천	만성피부병	만성소화기병
	방사능천	통풍, 동맥경화증, 고혈압 증, 만성담낭염, 담석증, 만성피부/부인병	통풍, 만성소화기병/담 낭염, 담석증,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나.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 온천협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확보함

■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위탁
-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온천전문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 심의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표시로 보고서 첫장(제출문)에 협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협회장의 직인이 없는 경우는 심의하지 않아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임.

■ 위탁계약 체결

- 안전행정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 연간 계획된 온천전문검사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온천전문검사 기관간 적정 배분 수행 원칙
- 온천전문검사기관별 검사 배분의 우선순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서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안전행정부 등록순서에 의함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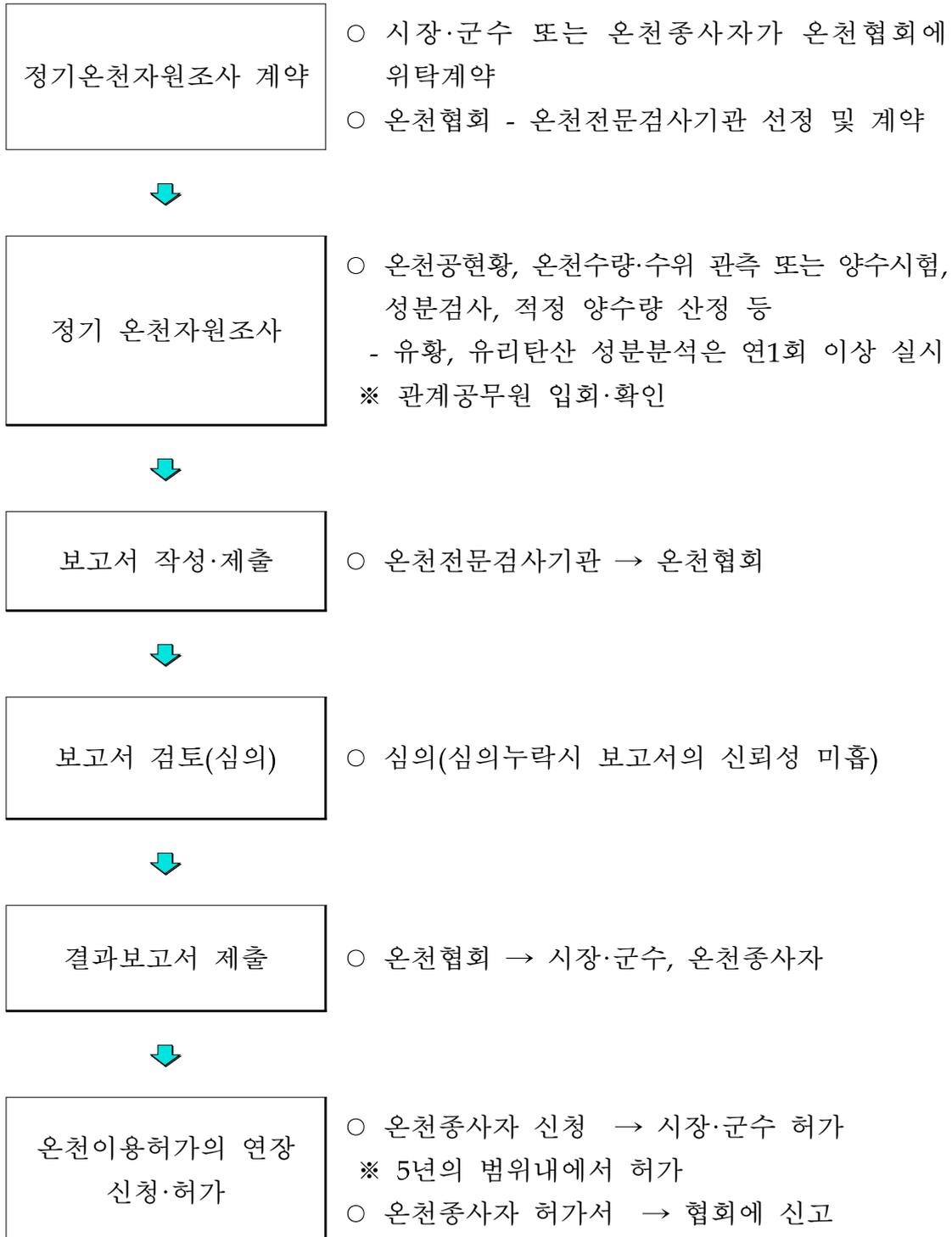
- 정기온천자원조사 :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동일년도의 인접지역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
- 성분검사 : 당해 온천공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수행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 자료의 보존

-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다. 개념도

■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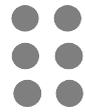
■ 온천개발 · 이용 · 관리법규



■ 온천개발 · 이용 · 관리절차



II



온천 운영

1. 온천에 대한 이해	43
2. 온천 현황	47
3. 향후 온천의 내실화 방안	52
4. 행정사항	57

II. 온천운영

1. 온천에 대한 이해

가. 온천의 정의

<온천법 제2조>

-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온천법시행령 제2조>

-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text{NO}_3\text{-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_2Cl_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_2HCl_3)은 0.03mg/L 이하일 것

- 사전적 : 지열로 말미암아 땅속에서 평균기온 이상의 온도로 데워진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동아출판사)

- 학자적(자연과학적 입장)

- 길버트((G·K Gibert) : 그 지역의 연평균 온도보다 15°F 높으면 온천

- 스팀(Stearn) : 그 지역 지표면의 연평균 온도보다 10°F 높으면 온천

※ 그 지표의 연평균 온도보다 어느 정도 높은 온도를 가질 때 온천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5°C (10°F)의 온도차를 많이 채택

○ 일반적 : 땅속에서 지표위에 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자연히 솟는 샘

※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 12.97℃(최근 10년 평균)

▲ 일본온천의 정의 : 온천은 “지중으로부터 용출하는 온수·광수 및 수증기, 기타의 가스(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한 천연가스 제외)로서 별표에서 표시하는 온도 또는 물질을 가지는 것”(일본온천법 1948)

1. 온도(온천원에서 채취된 때의 온도로 한다) : 25℃ 이상

2. 물질(열거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나 1개 이상) : 19개 성분

· 용존물질(TDS : Total Desolve Solid), Free Co₂, Li, Sr, Ba, Fe²⁺ or Fe³⁺, Mn, H, Br, I, F, HAsO₄²⁻, 총유황(SP₂+HS+H₂S에 대응하는 것), HBO₂, 협의의 Alkalinity 등

▲ 세계 각국의 온천수의 온도 기준

- 대 만 30℃ 이상, - 일본, 남아프리카 25℃ 이상

- 미 국 21℃(70°F) 이상, - 독일, 이탈리아, 영국 20℃ 이상

나. 우리나라 온천의 유래

■ 온천에 대한 기록

○ 동서강목 - 고구려 서천왕(286년)의 아우가 온천목욕을 하였다는 기록

○ 고려사 - 고려 선종 때 병든 부모님께 온천욕을 시키고자 하는 관리에게 휴가제를 실시

○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 -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온천의 욕장을 수리 병인을 구호하여야 함

- 조선왕조실록 - 경기지방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현직자에게 3계급 특진하고 직 위가 없는 자에게는 7등급에 임명하였고 천인은 입역을 면제하였다는 기록

■ 전통 온천지

- 온양온천
 - 백제시대의 지명은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탕정군(湯井郡), 고려시대는 온수군(溫水郡)이라고 함
 - 조선 세조임금은 1458년 이 곳에 들러 목욕을 한 후 효과가 좋아서 신정(神井)이라고 명명하였다 함
- 백암온천 - 신라시대의 한 사냥꾼이 창에 맞은 사슴을 쫓다가 행방이 불명하여 이 곳을 수색하던 중 온천이 용출하는 것을 보고 약수탕임을 알았다고 함
- 부곡온천 - 조선 세조임금이 온 몸에 음이 번져 고생하다가 이 곳에서 몸을 씻고 말끔히 나아 음샘이라 불리었다 함
- 이천온천 - 1870년경 한 종부가 이 곳에서 솟아나는 더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 안질이 완치되었다는 소문에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모여 들었고 이 때 부터 약탕이라고 불리었다 함
- 동래온천 - 온천의 신비로운 효험 때문에 한 마리의 학이 아픈 다리를 온천물에 담근 후 씻은 듯이 나아 날아가는 것을 본 노파가 자신의 아픈 다리를 온천물로 치료했다는 “백학(白鶴)전설”이 전해짐.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

국 별	온 천 이 용 사 례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6년 욱군 광천(鑛泉)병원을 설립, 온천수 이용 - 1870년 보불전쟁 때 율헤름요원(療院)에서 부상장병 온천치료 - 1908년 프리시아국 천원(泉源)보호법 공포 - 종합온천보양관인 쿠어하우스(kurhaus) 지정운영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세계대전 당시 못살리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탈리아 각지의 온천을 정부직할에 두고 온천지 정비, 온천요법의 의학적 연구 진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6년 광천보호법 제정 - 온천치료에 의료보험 적용 후 약물비 30% 감소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에 시찰단 파견, 1923~25년 이주와 벳부에 온천요양소 설치 - 1954년 보양온천제도 도입하여 현재 91개 보양온천지 운영

* 그 외 헝가리, 스페인,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천법령을 제정하여 온천수를 보호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온천 현황

가. 기본현황 - '12년 12월말 현재

< 지구 및 인원 >

- 총 452개 지구(온천원보호지구 142, 온천공보호구역 175, 신고수리 135)
 - 이용중 : 215 지구, 개발중 : 237 지구
 - 지정면적 : 196,533천 m²(지구 : 194,127, 구역 : 2,406)
- 온천이용업소 : 548개 업소(지구 : 405, 구역 : 126, 신고수리 : 17)
 - 연간 이용인원 : 59,044천명(최다 - 충남 덕산온천 : 4,088천명)

< 평균 온도 및 심도 >

- 온천수 온도 : 최하 법정 25℃ ~ 78℃(전국 평균 30.3℃)
- 굴착 심도 : 최저 70m ~ 최고 2,003m(전국 평균 705m)

나. 우리나라 온천의 이용환경

■ 여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감

-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휴가제도의 확산 등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관광 및 웰빙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전반적으로 온천이용객수 증가 경향
 - ※ ('97년) 4,200만 → ('07년)5,300만 → ('09년)5,400만 → ('10년)5,600만
→ ('11년)5,700만 → ('12년)5,900만
 - 온천대축제 행사 개최 등 온천산업활성화 추진 영향
- 기존의 전통온천지, 소규모 온천들은 시설 노후화, 영세화로 이용객수 점차 감소

■ 온천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여건변화

-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원 시설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설악 워터피아, 도고 파라다이스, 아산 스파비스, 덕산 스파케슬 등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등장으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간의 양극화
- 찜질방·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과 일반 목욕탕의 시설 현대화로 차별화된 시설·서비스 공급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온천업소의 폐업실태 증가

■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

-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토지굴착후 자금부족, 타법상 규제 등에 의한 장기방치로 지하수 오염 및 국토난개발 초래
- 일부 지자체 및 사업가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온천지로서의 특성과 정취를 살린 종합적 관광여건 조성에 한계
- 온천의 밀집분포
 - 등록온천 10개소 이상 지자체 - 포항, 강릉, 속초, 인천강화군 등
 - 등록온천 449개소 중 1/2이상이 부산, 울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남·북도에 밀집
- 온천공의 밀집분포
 - 온양, 덕산, 유성, 부곡, 동래 등 1개 온천지역에 20개공 이상 분포

다. 온천에 대한 국민 인식

○ 이용목적 → 휴식 및 목욕에 위한 여건 조성

구분	휴식	목욕	피부병 치료	물놀이	미용증진	계
점수(%)	64.0	25.9	3.3	2.4	4.4	100

○ 온천결정 고려요인 →고령층은 보양, 저령층은 휴양(시설, 교통)위주

구분	좋은 물	좋은 시설	위생	교통편리	주변경치	가격저렴
점수(%)	80.0	33.7	29.3	23.8	18.3	8.8

○ 효능 인식 → 성분별 효능을 의학적으로 검증, 온천별 함유성분을 홍보

구분	특수성분	주변의 환경	물의 온도	효능 없음	계
점수(%)	60.8	16.6	7.0	15.6	100

○ 일반목욕 대비 온천 매력포인트

구분	성분과 온도	시설 우수	편안한 분위기	주변 경치	위생
점수(%)	83.3	32.0	22.6	50.6	11.4

※ 차별화 요인 : 건강 기여도, 물의 성분과 온도, 뛰어난 주변경치

○ 온천시설과 일반목욕시설 구분 방법

구분	간판, 상호	온천허가증	온천마크	구별 못함	계
점수(%)	25.1	26.4	26.3	22.2	100

※ 온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로고의 적극 홍보

○ 온천시설내 필수 구비시설(다수 선택)

구분	노천탕	찜질	치료	물놀이	안마	피부관리	운동
점수(%)	48.3	46.1	39.6	20.7	16.1	15.6	13.6

※ 20~30대는 대형물놀이 시설 선호, 40대 이상은 전형적인 온천선호

라. 주요 개선사항

■ 온천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홍보추진

- 국가, 지자체의 온천산업 활성화 책무이행(온천법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 안행부, 지자체, 국민일보, 관광공사, 협회, 학회 공동 협력식
- 온천이용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온천책자 발간, 온천 홍보포스터 제작·배부, 일간지 광고게재
- 보양온천 도입, 온천의 의료적 효능연구, 온천의 우수성 보고서

■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및 난개발 방지)

-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운영, 온천로고 변경 - 온천법시행규칙 개정 ('08.3.24)
- 온천발견신고 제한 : 직선거리 1,000m
- 동일 온천원에서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제한

○ 온천법 개정(시행 - '10.8.5) 주요내용

- 온천법 : 온천개발절차 통합·일원화 및 개별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 규정,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관측·정보체계 구축,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 위탁 등
- 시행령 : 온천공보호구역 범위축소(4만m² ⇒ 3만m²),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기준, 절차 등 보완, 굴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요건 및 절차 마련,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산업·공중 시설 범위 신설 등
- 시행규칙 : 온천공 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절차 규정, 온천수 특정성분의 검사주기 조정,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 온천발전전략과제 연구 추진

- 온천수 음용화 방안, 온천치료 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온천수 열 에너지 활용방안, 온천도시 조성방안 등

3. 향후 온천운영의 내실화 방안

가. 온천산업의 활성화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07년 이후 매년 정례적 개최로 범 국민적 온천이용“붐”조성
- 온천요금할인, 온천체험, 건강미인선발, 가요제, 세미나 개최 및 지역축제와 연계,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울진	속초	동래	충주	부곡	유성

※ 2013년(제7회)에는 아산시에서 개최(10월 예정)

■ 보양온천 제도의 조기정착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해 보양온천 지정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규명

< 보양온천 지정기준 >

- 온천수 기준 :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 전국 온천 443개 지구중 123개 지구 해당(27.8%) ('11. 12월 기준)
- 내부시설 기준 :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지정기준 개선 - 기존 시설기준 외에 지구 또는 구역단위 지정기준 마련
 - 현재 보양온천 지정기준은 온천수(온도, 성분, 수량), 보양온천시설(건강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보양온천 환경 기준(필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가지임

- 보양온천 지정 : 설악워터피아(속초), 파라다이스스파도고(아산), 덕구(울진), 덕산스파캐슬(예산),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동해), 중원(충주), 비오매드(화순), 삼매봉(제주)

■ 온천 건강보험제도 도입

- 저렴한 비용으로 보양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도입
 - ※ 프랑스(약물사용비 3~40%감소), 일본(온천요양시 의료비 공제)
- 도입방안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개최 추진
- 온천수로 보험적용 가능한 항목(수치료)에 시범적 적용추진
- 온천전문의 제도도입 검토

■ 온천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온천자원관측 및 정보체계시 스템 구축

- 온천자원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자동관측시설 설치
 -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위 모니터링 및 수온 관측 등
 - 온천의 올바른 정보지식을 위한 정보시스템 제공
- 10년에 걸쳐 주요 100개 온천공에 대한 관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매년 약 2~3개 온천지구·구역에 대한 수위, 수온 관측장비 설치
 - ※ (특)한국온천협회에 의한 관리체계 구축

■ 온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익 창출

- 고온의 온천수 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 보급
 - 고온 온천수 자원은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설치비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효율 장려금 적용 추진
- 부곡온천 및 동래온천 등 계획예정

■ 온천수 이용 화장품, 비누, 의약품 등 개발

- 강릉시 금진온천 - 메이스초이스(스킨, 로션, 미스트, 샴푸, 비누 등 화장품), 미네랄 워터(미국, 캐나다 수출)
- 전북 순창군 - 나노버블(온천수 혼합음료) 생산·시판 중
- 충남 아산시 - 화장품, 미스트, 마스크 팩, 입욕제 등 온천수 시제품 개발·판매

■ 온천수 음용화 제도 도입

- 지하수의 음용기준은 먹는물관리법령에 근거, 온천수는 특성상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음용화는 곤란
 - 온천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으나 광물성분이 함유되어 먹는물 기준중 심미적 기준(색도, 탁도, 경도 등)에 불부합
 - ※ 광물질이 함유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07.8)으로 별도 수질기준 마련
- 온천수 치료효과 검증후 건강 치료용으로 제한적 음용(환경부)
- 먹는물 기준을 충족하되 심미적 기준 배제 방안 먹는물관리법 개정 또는 별도의 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해외사례

- 프랑스 에비앙(EVIAN)수
 - 탄산화합물·칼슘·마그네슘 등 함유, 신장병과 비뇨기 질환에 효능이 있고 일정량 음용시 이뇨효과
- 벨기에 스파(SPA)
 - 광천을 의미, 성분은 함철 탄산 냉천으로 국가가 관리
- 일본 아리마(有馬)
 - 낮은 온도 탄산천, 위장병에 좋고 천연탄산수로 사이다 제조

■ 온천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온천수음용 및 관리도모

- 온천도시 육성 방안 및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 마련
 - ※ 장기 검토과제(시행령에 지정기준 마련 선행)

■ 온천산업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 조세부담 : 관광단지 수준으로 완화
 - 취득세·등록세·농지개발부담금 50% 감면, 전기료, 하수도세 인하, 지역개발세 경감

■ 해외 우수온천 벤치마킹 실시

- 온천상품이 활성화 되어있는 가까운 일본 등 온천 우수선진국에 대하여 안행부 자체 또는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한 벤치마킹 국외여행 추진

■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서비스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온천업무 추진관련 관계부처에서 수용되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협의

나. 온천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할 정립

■ 온천협회의 역할

- 온천시설에 관한 자료 구축 등 전문성 강화
 - 관측시스템의 조기 설치 등 온천에 관한 정보구축을 바탕으로 전국의 온천시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 수행
 - 전국 온천시설의 정보제공 및 영세한 온천시설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 온천시설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
- 시설, 계절별 특성을 살린 융통성 있는 서비스매뉴얼 지침 개발·배포 필요
- 온천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다양화
 - 온천에서의 서비스 중요성,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의 역할과 태도 등을 포함
 -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선진국 사례 소개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온천종사자의 역할

- 정기적 평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
 - 고객의견 카드 작성,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이 온천시설 방문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파악
 - 고객의 공통적·개별적 요구를 구별함으로써 다양한 고객특성 파악을 통한 서비스 개선
-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고객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 온천시설별 서비스 역량과 방문고객 특성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목표설정 필요가 있으며 다른 온천시설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유도하고 직원들이 그 의미를 공유하여 즐겁게 실천하도록 유도
 - 업데이트된 온천시설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재방문 유도
- 직원 우대를 통한 고객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업무환경 조성 등으로 직원감동을 통한 고객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설 수 있는 휴게 공간 마련 등 근무 만족도 향상
 - 서비스 중요성과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정신을 갖춘 직원들의 다량 선발 확충

4. 행정사항

가.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 관련 법령·규정

-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① 온천종사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천법 시행령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온천법	공중위생관리	온천운영	계
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4시간

- 안행부고시 제2010-71호('10.10.29)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4조(행정지원)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강사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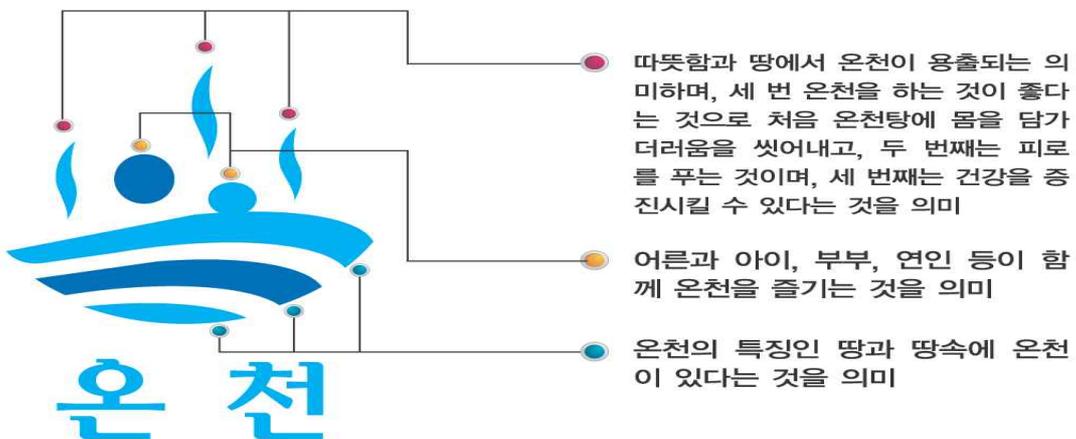
- 온천종사자(온천법 제2조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 *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광숙박업 시설 또는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시설이나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천법 제37조 제1항제3호)
 -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나. 새 온천로고의 활용

■ 온천로고의 부분별 의미



■ 인증패 제작 보급

- 온천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정부승인 온천과 일반목욕탕(숙박업소) 등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를 구별하여 국민이 인식되도록 하고자
- 새 온천로고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국민이 쉽게 온천과 일반목욕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증패 제작·보급 중

다. 관련 단체 소개

■ (특)한국온천협회 소개

- 설립근거 (온천법 제27조)
 - ①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특수법인)
 - ③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일 : 2007. 6. 13.

- 설립목적
 - 온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의 권익향상에 주력
 - 합리적 온천 경영체계 확립 및 온천사업의 건전한 운영능력 배양
 - 온천에 관한 연구와 온천지식의 보급으로 공공의 복리·건강증진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 협회의 사업 등(온천법 제27조의2)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사)대한온천학회 소개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①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3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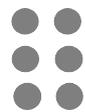
※ 사단법인 대한온천학회 설립일 : 2008. 12. 19

○ 설립목적

- 온천의 지질, 자원, 의학, 온천산업 등에 대한 연구, 교육, 학술활동 수행
 - 온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과 회원간의 친목도모
- ※ 온천수의 의학적 효능과 지질학적 기원의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의학, 지질학, 환경공학, 건축학 및 여행작가 등 전문가로 구성

○ 학회의 사업 등

- 총회와 학술대회 개최, 초록집, 소식지 및 학술지 발간
- 온천의 지질, 자원, 의학, 온천산업 등의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업
- 온천의 자원, 열, 성분 이용 등을 통한 생산품 개발에 대한 사업
- 정부, 자치단체, 사업자 등으로부터 온천관련 위탁하는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업



공중위생관리

1. 총론	63
2. 공중위생영업 신고	68
3. 공중위생업소 관리	71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75

III. 공중위생관리

1. 총론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만족도 향상

■ 목표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전략

- 사전지원적 규제합리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요

-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5839호(1999.2.8)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
- 그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를 개설통보제로 바꾸어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을 제한하며, 휴일제 및 영업시간제한 등을 폐지하여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그러나 시행결과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각종 무질서와 음란행위가 증가하고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됨

나. 공중위생관계법령의 변천내역

■ 관련법령 제정(1962.1.1)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등
- 상기 관련법령을 통합하여 공중위생법으로 제정

■ 변천내역

- 행정공무원의 위생영업소 출입제한(1999.2.8.)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교육 정례화(2002.8.26)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및 과징금제도 신설화
-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2004.1.29)
-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 편입(2005.3.31)
-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을 통한 위생교육 실시(2006.9.27)
-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2008.3.28)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011.3.30)

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 법률명과 소관 업종명의 변경 (제2조)
 - 법률명을 「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각 업종명도 '○○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함.
- 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위생관리의무 (제10조제1항 및 제6항)
 - 숙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규정함.
- 손씻기 생활화 교육·홍보 신설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씻기 생활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 전·후로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함.
- 위생관리기준 준수의무와 영업자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연계 실시로 법령의 실효성 제고 (제15조 및 16조)
 -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생교육 내용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생관리의무 및 교육이수 의무위반자에게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함
- 처벌 규정 개선 (제21조, 제45조)
 - 경미한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되,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3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제45조제3항)
 - 공중위생서비스 사업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라. 공중위생영업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 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숙박업 관리체계 및 관리부처 다원화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 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 숙박업(일반, 생활)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 공동목욕탕, 한증막, 사우나, 찜질방 등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 “종합체육시설업”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련 별표2)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련 별표4)

2. 공중위생영업 신고

가. 영업의 신고

■ 신고의 의미

- 일반적으로 신고란 어떤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단순히 알리는 것을 뜻하지만(예 :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수리함.(미신고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시·군·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업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및 설비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 개정 2012.12.11)</p>
숙박업	<p>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p>
목욕업	<p>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p> <p>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 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p>

나.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미용업의 세부 업종간의 변경
- ※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확인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되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

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승계후 1개월 이내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및 영업신고증

3. 공중위생업소 관리

가. 공중위생관리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 공중이용시설.(6종.)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나. 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권 한 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요청
- 소속 공무원은 영업소·사무소,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
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 열람 가능
- 상기 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업무를 행하여야 함(단,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다. 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공중위생영업 신고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3년 이상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공중위생행정 종사기간 동안에 한함)

ㄹ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공무원 중 해당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

라.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 지도단속업무의 고유사무 권한 및 임무

- 시·군·구 :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확인
- 경찰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알선등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안마사에관한규칙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위생감시 준비사항

- 점검표 및 확인서(지침 별지 제2-1~2-4호 서식)
-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 공중위생감시원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숙박업 : 숙박업소 청결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확인

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제15조의2, 영 제9조의2)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 인원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을 배정받은 자치구에서는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명예감시원의 활동일수는 년30일 이내로 한다.

■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안별로 행정처분등 조치를 하거나 행정처분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발내용을 통보받은 당해기관은 위반내용이 명백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명예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에게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가. 과징금

■ 과징금 정의 및 부가·귀속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금전을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당해 시·군·구에 귀속

■ 과징금의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1)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 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과태료처분 (법 제22조)

■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신고의무 등을 게을리한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대상 및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금액 (만원)
1. 법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1호	30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1호의2	100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제22조제1항 제1호의2	70
4.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제22조제1항 제2호	50
5.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제22조제1항 제3호	50
6.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22조제1항 제4호	100
7.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제22조제1항 제5호	100
8.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 22 조 제 2 항 제6호	20

다. 벌칙 규정(법 제20조 및 제21조)

■ 벌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지권에 의거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거 조치됨

■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영업(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 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조의2)
 - 건전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제4조 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별지제2-1, 2호서식]

공중위생업소점검표

(숙박업)

구분	점 검 사 항
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준 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객실20실 여 관급 이상 숙박시설은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이상, 10월1부터 3월까지는 2월마다 1회 이상 소 독을 실시)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일광 기타 방법에 의하여 알맞게 건조시켰는지 여 부.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 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하는지 여부 - 충분한 환기가 되고 있는지 여부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은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은 20 룩스(단, 복도 및 계단은 심아에는 10 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 업소 안에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 업소 내에 신고증 및 접객대 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업)

구분	점 검 사 항
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욕조 및 샤워기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여부 - 발한실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설치 여부 - 발한실의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 -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 설치 여부 - 무인감시카메라설치(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설치금지) 경우 안내문 게시 여부 - 탈의실, 욕실, 휴식실 구조형태 적합 여부
수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 수건, 가운,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시 세탁한 것 제공 여부 - 발한실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의출입여부(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 - 목욕실, 탈의실에 5세 이상의 남녀를 같이 입장시켰는지 여부 - 이성 입욕보조자가 있는지 여부 - 소독을 한 아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아미용기구의 분리 비치 여부 - 영업신고증, 요금표의 게시 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일 청소 및 배수시설 수시 청소 여부 - 업소 내 조명도 준수 여부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 여부 - 찜질서비스영업의 경우 22시이후 05시까지 보호자동행 없이 청소년 출입행위 여부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2, 개정 2012.1.27)

1.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균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균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I 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 군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원수는 II 등급, 욕조수는 III 등급기준에 준한다.

II.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제2009-233호, 환경부고시, 2009.9.23]

다만, 옥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군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에 따른다.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2009-174호, 환경부고시, 2009.8.24]

2. 옥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옥조의 대각선(옥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옥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옥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옥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옥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기 준							
급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mg/L)	용존 산소량 (DO)(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수/100mL)	용매추출 유분 (mg/L)	총질소 (mg/L)	총인 (mg/L)
I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II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III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2013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인쇄일 : 2013년 4월

발행일 : 2013년 4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301호

☎ 02-720-5004 전송 02-723-5003

인쇄처 : 애드컴서울 ☎ 02-2285-6601
